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대법원의 위자료 상향과 실효성 제고 방안

전용식 연구위원, 채원영 연구원

연구

- 2016년 10월 24일 대법원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소송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를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함.
 - 위자료 기준금액을 2억 원으로 적용하고 기준금액의 50% 범위에서 증액·감액 조정함.
 -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아닌 교통사고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경우 기준금액은 1억 원이나 음주운전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 금액을 상향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취지임.

- 그러나 현행 자동차보험 보상제도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음주운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법 행위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대법원의 위자료 상향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 현재 자동차보험 보상제도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사고 부담금 300만 원을 부담하면 몇 명에게 사상을 가하는 사고를 유발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음.
 - 사고부담금 제도는 2004년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도입하였으나 음주운전 사고발생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2004년 이후 매년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위자료 상향의 목적인 음주운전 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서는 불법행위 비용을 음주운전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함.
 -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책임보험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Ⅱ와 자기신체상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만의 경우 대인배상Ⅱ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 영국의 경우 음주운전 가해자의 자기신체상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음.

- 또한 보험회사가 특별가중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피보험자인 보험회사는 청구된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보상하지 않음.
 -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향후 5년 동안 자동차보험 계약을 인수하지 않는 미국 스테이트팜의 사례와 뉴욕과 캘리포니아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인상 정책은 음주운전의 유인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임.

1. 검토배경



■ 최근 대법원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소송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를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함.

- 2016년 10월 24일 대법원은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 위자료 산정방안을 확정함.
-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대형 재난사고, 교통사고 등의 불법행위 유형별로 기준금액이 가중됨.
 - 교통사고 사망 시 위자료 기준금액은 1억 원이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기준금액은 특별가중 기준금액인 2억 원으로 상향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50% 증액이 가능함.

〈표 1〉 불법행위별 기준금액과 특별가중 기준금액

구분	기준금액	특별가중
교통사고	1억 원	2억 원
대형재난사고	2억 원	4억 원
영리적 불법행위	3억 원	6억 원
명예훼손	일반피해	1억 원
	중대피해	2억 원

주: 최대금액에 대해 불법행위자의 양태에 따라 ±50%를 가감할 수 있음.
 자료: 대법원 보도자료(2016. 10. 24),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최종안 마련”.

■ 대법원의 위자료 산정방식 조정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등 악의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¹⁾

- 음주운전은 실정법상 범죄에 해당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위자료 가중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됨.

■ 본고에서는 징벌적 위자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징벌적 위자료의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배상 금액을 상향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임.
- 그러나 현행 자동차보험제도는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부상 또는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가입금액 한도에서 배상을 하고 있어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없을 것임.

1) 보험업계와 언론에서는 이를 “징벌적 배상조치”로 해석하고 있음; 매일경제(2016. 11. 8), “중과실 차사망사고에 ‘위자료 폭탄’”.

2.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보상제도



■ **현행 자동차보험의 보상제도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음주운전 가입자를 보상함.**

-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신체를 해하거나 사망시키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보험회사는 가해자의 자기차량담보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위자료, 치료비, 상실수익액,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음주운전 가해자의 신체상해도 보상함.²⁾
 - 현행 보상제도에서는 음주운전 가해자의 징벌적 위자료도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함.
-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300만 원을 부담하면 몇 명에게 사상을 가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민사적 책임이 경감될 수 있음.
- 음주운전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할 경우 형량이 감소함.
 - 음주운전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불가 특례를 인정받지 못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음.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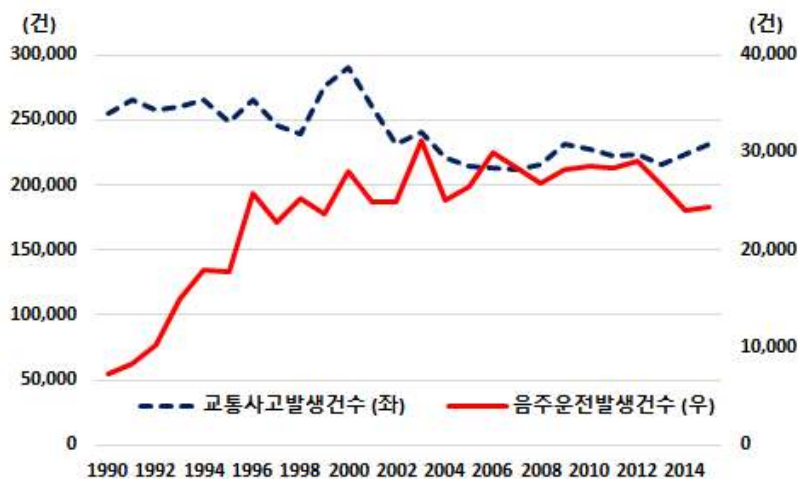
■ **음주운전 가해자가 일으킨 손해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보상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상하는 것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해자가 부담하는 음주운전 비용은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에 불과함.
 - 사고부담금 제도는 2004년 도입되었으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유인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임.
 - 2004년 도입 이후 2015년까지 음주운전 사고 발생비중은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그림 1> 참조).
-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대인배상Ⅱ는 무면허운전 가해자를 보상하지 않지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보상하고 있음.

2) 「상법」상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 시에도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되어 있지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조는 대인Ⅱ, 대인Ⅲ, 대물의 경우 고의에 의한 손해인 경우만 면책되도록 정함. 그리고 자기신체보험의 경우 고의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만 보험자가 면책됨.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하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3) 이기형(2016), 「음주운전 사고방지에 대한 보험제도 기여방안」, 『KiRi Weekly』, 제398호, 보험연구원 참조.

〈그림 1〉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음주운전 사고발생 건수 추이



주: 자동차사고 운전자 중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임.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분석』, 각 연도.

3. 주요국의 음주운전 보상제도



- 일본은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인, 대물배상은 보험회사가 지급하지만 피보험자가 청구자가 되는 (인신)상해보험은 지급할 책임이 없음.
 -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서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한 손해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음.⁵⁾
 - 피보험자 자신이 받는 보상은 (인신)상해보험 이외의 차량보험, 탑승자 상해보험, 자손사고보험, 대차비용특약, 변호사비용특약 등에서도 면책임.

- 미국 뉴욕주는 보험 계약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가해자의 신체상해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뉴욕의 경우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보험자인 보험회사는 앰블런스, 응급실 비용을 제외하고는 자기

4)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 위반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상태임.
 5) 일본손해보험협회(2016), “음주운전방지메뉴얼”, p. 28; 이기형(2016) 재인용.

신체상해(personal injury protection)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급했던 앰블런스, 응급실 비용도 구상함(뉴욕주 보험업법 § 5103(b)(2)).

■ 또한 뉴욕과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운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음주운전 벌칙으로 보험료 인상, 보험계약 취소 혹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음.

- 피해자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가해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⁶⁾
-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의 대형 4개 보험회사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계약자의 보험료를 평균 1,830달러에서 7,794달러(4.3배), 그리고 1,812달러에서 5,532달러(3배)로 인상함.
- 뉴욕주에서 사업하는 스테이트팜은 음주운전 적발 경험이 있는 운전자의 보험가입을 5년간 허용하지 않음.

■ 영국은 음주운전이 위험의 동질성 유지를 저해하여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하고 있음.⁷⁾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보험료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불공정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음.

4. 개선방안



■ 음주운전 가해자 자신의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현 자동차보험 보상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함.

- 일본, 미국, 영국 등은 음주운전 가해자의 차량손해, 상해·사망을 보상하지 않고 있음.
 - 도덕적 해이로 사고를 유발한 자에게 보험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를 지향하는데 방해가 되고,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는 판단 때문임.
-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은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의 건전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상법」 제732조의2 제1항 단서와 제739조 개정안을 제출함.

6) Taylor v. Superior Court(1979) 24 Cal. 3d 890; Peterson v. Superior Court(1982) 31 Cal. 3d 147 판례 참조.

7) 한기정(1998),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판례실무연구Ⅱ』, 비교법실무연구회, pp. 672~674.

- 대법원 판결(대판 89다카17591)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에서 피보험자 자신의 상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상해보험의 약관규정은 「상법」 제732조의 2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해석한 바 있음.
- 그러나 음주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로 사고를 유발한 자에게 보험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인해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를 지향하는 데 방해가 되고,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목적에 반하는 것임.
-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상해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하지만,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이 모두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책임보험인 대인배상 I 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지만 대인배상 I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배상 금액은 음주운전 가해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부 법학자들은 음주운전을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음주운전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구성원들의 위험의 동질성에 큰 변동을 가져오므로 음주운전을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⁸⁾
 - 보험계약의 본질은 추상적인 위험단체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위험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 의해 위험을 전가·분산시키는데 있음.
- 대인배상 II 담보는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의 계약인 임의보험인데 음주운전 가해자를 위해 피해자 보상을 하는 것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로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대만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책임보험의 한도 이상을 담보하는 자동차보험에서는 음주, 무면허, 범죄 및 고의행위 등에 대해서는 면책임.⁹⁾

■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방안, 보험회사가 징벌적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향후 5년 동안 자동차보험계약을 인수하지 않는 미국 스테이트팜의 사

8) 박세민(2002),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해석론」, 『경영법률』, 제13집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p. 9; 양승규(1993), 「무면허운전면책 보험약정의 효력과 그 적용한계」, 『상사법의 기본문제』, 해암이법찬교수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p. 701; 김대연(1998), 「인보험에서의 무면허·음주운전면책보험약관의 효력」, 『상사판례연구』, 제10집, 한국상사판례학회, pp. 148~149.

9) 대만 「강제자동차책임보험법(強制汽車責任保險法)」 제29조.

레와 뉴욕과 캘리포니아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인상 정책은 음주운전의 유인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임.

- 피해자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대법원의 위자료 상향 조정이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시켜 음주운전 유인을 억제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함. [kiri](#)